

의안번호	2202384
의 퇴 인	김예지의원
회 답 일	2024.10.25.
추계번호	24C2420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¹⁾ 지원정책심의위원회 및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6,640만원, 2030년 4억 6,640만원 등 5년간 총 26억 3,200만원(연평균 5억 2,64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300	-	-	-	-	300	60
안 제5조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 지원정책심의위원회)	2.4	2.4	2.4	2.4	2.4	12	2.4
안 제8조 (조사통계사업)	464	464	464	464	464	2,320	464
합 계	766.4	466.4	466.4	466.4	466.4	2,632.0	526.4

주: 1.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추후 사업 세부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 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둠(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	의무규정

1) 안 제2호제2항에 따라 의사로부터 소아청소년당뇨병 등 진단을 받은 3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청년을 말함

3	안 제7조 (소아청소년당뇨병등 연구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연구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제1항) ○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제2항) 1.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예측 2. 연도별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3.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 (조사통계사업)	○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소년당뇨병등 발생 위험 요인과 발생, 진료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소아청소년당뇨병등의 발생률과 소아청소년당뇨병등으로 인한 합병증 및 장애 현황 등 소아청소년당뇨병등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제1항) ○ 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제2항) 1. 소아청소년당뇨병등 등록 통계사업 2. 소아청소년당뇨병등 실태조사 3. 그 밖에 소아청소년당뇨병등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조사통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5	안 제9조 (당뇨병예방관리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당뇨병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소아청소년당뇨병등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제1항) ○ 예방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제2항) 1.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소아청소년당뇨병등 관리 정보 제공 및 상담 3.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소아청소년당뇨병등 전문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소아청소년당뇨병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예방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아청소년당뇨병등의 발생 및 소아청소년당뇨병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환자와 관련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1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별 소아청소년당뇨병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업무 지원 2. 제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연구사업 관리 3. 제8조에 따른 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제9조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시행 5.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6.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에 대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지원 및 교육 7. 소아청소년당뇨병등 관리에 대한 의료인 및 관계자 대상 교육 8.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아청소년당뇨병등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8	안 제12조 (비용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제1항) 1. 제2조제2호에 의한 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인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 제4조제2항에 정한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의 혈당관리 의료기기와 혈당 관리 비용 3. 지원센터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4. 제1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5조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		
3	안 제7조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연구사업)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8조 (조사통계사업)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5	안 제9조 (당뇨병예방관리사업)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10조 (역학조사)		
7	안 제11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		
8	안 제12조 (비용의 지원)		

□ (안 제7조) 제정안에 따라 소아청소년당뇨병등연구사업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지원 대상 사업의 내용,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뇨병 관련 연구사업과 소아 당뇨관련 연구사업 수행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2] 당뇨병 관련 연구사업 현황

(단위: 만원)

연도	연구 과제명	연구비
2018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발	4,000
201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통합 모델 개발 연구	17,200
2020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연구	6,860
2021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3,000
202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모형 개발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5,000

자료: 보건복지부

- (안 제9조·제10조) 제정안에 따라 당뇨병예방관리사업과 역학조사를 시행할 경우 현행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시행될 예방관리사업의 유형과 규모, 역학조사 시행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
-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병등록관리 및 예방관리 사업과 역학조사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 제정안에 따라 소아청소년당뇨병에 특화하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역학조사를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신규 사업 추진 여부 또는 기존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가정하기 어려움

[표 3] 만성질환 관련 예방·역학조사 관련 사업 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제정안	관련 현행사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2024년 예산액
제9조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속치료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등록교육센터 운영	8,415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100
제10조 (역학조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전체 역학조사	코호트 추적조사 및 기반연구지원 등	대규모 코호트 구축 운영을 통해 한국인에게 흔한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질병 위험요인 규명	4,738

자료: 2024년 질병관리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 (안 제11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 여부, 각 사업의 규모와 소요 인력 등의 세부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는 이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참고로, 희귀질환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24년 기준 거점기관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기관 당 1.2억원을 지원하고 있음(2024년 예산액)
- (안 제12조) 제정안에 따른 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 항목별 대상자 수와 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제정안은 의료비 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한편, 제정안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19세 미만 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환자)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급여비와 안 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당 관리 의료기기 관련 요양비 지출 금액은 아래와 같음

[표 4] 제정안에 따른 환자 유형별 당뇨병 관련 의료비 현황

(단위: 백만원)

환자유형	연도	급여비	본인부담금
19세 미만	2021년	6,728	2,847
	2022년	6,823	2,990
	2023년	6,745	3,138
의료급여수급자	2021년	292,832	6,390
	2022년	309,841	6,453
	2023년	334,096	6,940
차상위계층	2021년	46,522	2,374
	2022년	50,513	2,436
	2023년	56,788	2,698

주: 주상병기호 E10~E14 기준으로 발췌
 자료: 보건복지부

[표 5] 당뇨 관련 의료기기 요양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령	2021	2022	2023
1형당뇨	인슐린펌프	전체	264	313	403
		34세이하	88	133	225
	연속혈당측정기	전체	769	1,250	850
		34세이하	519	810	534
	당뇨소모성재료	전체	19,256	24,320	30,656
		34세이하	8,902	10,809	12,860
2형당뇨	당뇨소모성재료	전체	57,154	60,758	64,148
		34세이하	1,587	1,621	1,634
임신성당뇨	당뇨소모성재료	전체	2,411	2,399	2,184
		34세이하	1,216	1,214	1,073

자료: 보건복지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 계획(안 제4조),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안 제5조), 조 사통계사업(안 제8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
 - 질병관리청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 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4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을 준용하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사업”과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제정안 시행 첫해인 2026년에 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안 제5조) 보건복지부에 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회의 횟수와 위원회 위원 수 및 회의 수당의 곱으로 추계
 - (회의 횟수) 보건복지부 유사사례인 현행 국가암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²⁾
 - (위원 정수) 제정안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위원회 정원을 15명으로 하며,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위촉 위원은 12명으로 가정
 - 안 제5조제3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문이 없으므로 국가암관리위원회 사례에 따라 12명의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수당)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을 준용하여 1회 20만원으로 하며, 추계기간 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0만원, 2030년 240만원 등 5년간 총 1,200만원으로 추계됨

2) 국가암관리위원회는 2022년 7월~2023년 6월 1년간 대면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3)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안 제8조) 소아청소년당뇨병등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유사사례인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 사업을 준용하여 국가통계 위탁비용과 통계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질병관리청은 1년 주기의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4억 6,400만원을 배정함
 - － 이 중 민간위탁비용은 4억원으로 자료처리비(7,500만원), 인건비(2억원), 운영비(1억 2,500만원)을 포함하며, 그 외 통계집 발간 및 통계 분석소프트웨어 임차, 통계생산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6,400만원이 배정됨
 - 소아청소년당뇨병등 통계사업은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사업비를 준용하고, 사업 위탁비용은 5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안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경우 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실태조사는 시행 주기, 유형(추적조사 여부), 표본 수 등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상이하나, 제정안은 실태조사 시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6,400만원, 2030년 4억 6,400만원 등 5년간 총 23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